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9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최수진

김소희 • 서천호 • 고동진

송석준 • 조경태 • 김형동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 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

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세액을"을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기분	과세기준일
제1기분	매년 6월 1일
제2기분	매년 12월 1일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기분	납기
제1기분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22조 본문 중 "직전 연도"를 "직전 기분"으로, "해당 연도"를 "해당기분"으로 한다.

제128조제5항 중 "해당 기분(期分)"을 "해당 기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 15조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 부담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기분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종전 규정에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세 부담 상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	제111조(세율) ①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	
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	
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	
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	
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u>산출한</u>	<u>산출한</u>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 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 다.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 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 다.

액을 그 기분(期分)의-----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기준일은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기분	과세기준일
제1기분	매년 6월 1일
제2기분	매년 12월 1일

는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기분	납기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제1기분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제2기분	
	31일까지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 ② (생 략)
-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u>직전</u>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u>해당</u>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7 ④ (생 략)
 -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해당 기분</u> (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 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_
	_
	_
	_
	_
<u>직</u> 전	1
<u>기분</u>	_
	_
	_
<u>해당 7</u> 분	<u> </u>
<u>亡</u> , -	_
,	_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_
④ (현행과 같음)	
(5)	_
	_
	_
<u>해당 기분</u> -	_
	_
	_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	
고납부할 수 있다.	